

## 폐목재 위탁처리 과업내역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최종 처리업체에게 위탁처리하는 총량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성동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최종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의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가정 또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목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과정) 폐목재 위탁처리 계약체결 ⇒ “발주기관”의 수송차량으로 “계약상대자”의 최종처리장소로 수송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선별 및 파쇄·소각 등 적정 최종처리 ⇒ “계약상대자”는 반입증명 자료 첨부하여 처리비용 청구 ⇒ “발주기관”은 처리비용 지급

제3조(운송 및 처리조건)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최종 처리업체까지 수송하고, 수송부담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발주기관”이 수송하는 폐기물(폐목재)은 “계약상대자”가 전량 수용하며, 타업체의 폐기물에 우선하여 “발주기관”의 폐기물을 반입·처리한다.

③ 단,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송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전상(공장 가동 중단, 야적장 협소 등)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 통보 및 협의에 의해 일정기간(1주일 이내) 반입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④ (연간)단가계약의 처리물량은 총량이며, 처리물량이 예정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처리업체의 자격조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보관 장소를 소유하고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대상 폐기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에서 가정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목재 등을 처리대상 폐기물로 한다.

제6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종료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유책당사자가 배상의무를 가진다.

제7조(의무와 책임)

① 생활폐목재 폐기물은 “발주기관”이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하고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폐기물의 반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입된 생활폐목재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임의 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폐기물 반입 일시정지 및 출입 시간을 제한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입 일시정지 및 출입시간을 조정 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시행 2일전까지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최종처리를 타업체에 재위탁하지 못하며, 부정확한 방법으로 처리비 청구 등 성실의무를 위반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최종처리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비용 청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폐목재 처리비용을 월 단위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기관”에게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처리비용 청구시 계량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최종처리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폐목재 처리비용을 청구·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한다.

제9조(대장 등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생활폐목재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명기한 폐기물 반입관리대장을 작성·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활폐목재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록·관리하되,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없이 생활폐목재 폐기물의 반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폐기물 반입 거부로 발생한 손실비용을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하고 배상금은 “발주기관”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청구하는 금액으로 하며, 배상금액 납부는 “발주기관”이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발주기관”은 반입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고책임) “발주기관”이 수집·운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으로 반입한 생활폐목재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난 등과 “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과실을 포함한 모든 제반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3조(계약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처리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다 같이 해약을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행위  
단, 일반폐기물 처리물량이 일시에 증가 등 “계약상대자”의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7.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 협약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조리에 따른다.

② 계약의 미이행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무 불이행 조치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의 분쟁 등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15년 11월 일

작성자: 행정7급 이기은 (인)

확인자: 청소행정과장 박사채 (인)